

대전지방법원 2023. 7. 20 선고 2023가단204306 판결 [보증채무금]

전 문

원 고 중소기업은행

피 고 A

변 론 종 결 2023. 6. 15.

판 결 선 고 2023. 7. 20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
가. 13,260,562원 및 그 중 12,000,000원에 대하여 2023. 6. 1.부터 2023. 6. 9.까지 연 9.25%,
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4,400,000원의 범위에서,

나. 130,664,587원 및 그 중 122,834,350원에 대하여 2023. 6. 1.부터 2023. 6. 9.까지 연 11%,
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80,000,000원의 범위에서,

다. 22,469,954원 및 그 중 20,422,800원에 대하여 2023. 6. 1.부터 2023. 6. 9.까지 연
8.899%,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4,507,360원의 범위에서,
라. 113,217,678원을,

마. 12,540,545원 및 그 중 11,280,000원에 대하여 2023. 6. 1.부터 2023. 6. 9.까지 연
8.133%,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6,929,000원의 범위에서,

바. 39,250,349원 및 그 중 36,643,091원에 대하여 2023. 6. 1.부터 2023. 6. 9.까지 연 11%, 그
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45,600,000원의 범위에서, 각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주식회사 B(이하 'B'이라고 한다)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중소기업자금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. 위 각 대출금 채무의 약정일, 약정원금, 이율 및 2023. 6. 1. 기준 잔여 원금 및 이자 등은 아래 표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. 피고는 위 각 대출계약 당시 아래 표 각 '근보증한도액'란 기재의 범위 내에서 B의 원고에 대한 각 대출금채무를 근보증하였다.

기준일(2023. 6. 1.)

순 번	약정일	약정금(원)	잔여원금(원)	이자(원)	원리금합계(원)	이율(%)	근보증한도액(원)
1	2015. 2. 23.	60,000,000	12,000,000	1,260,562	13,260,562	9.250	14,400,000
2	2015. 8. 31.	150,000,000	122,834,350	7,830,237	130,664,587	11	180,000,000
3	2016. 4. 22.	122,000,000	20,422,800	2,047,154	22,469,954	8.899	24,507,360
4	2017. 7. 5.	144,000,000	143,000,000	9,985,481	152,985,481	11	113,217,678
5	2019. 12. 2.	40,000,000	36,643,091	2,607,258	39,250,349	11	45,600,000
6	2021. 6. 29.	94,050,000	11,280,000	1,260,545	12,540,545	8.133	16,929,000

나. B은 2022. 10. 25. 대전지방법원 2022하합7070호로 파산신청서를 접수하였다.

[인정근거 :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10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, 을 제1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]

2. 판단

가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, 위 1의 가항 표 중 순번 4를 제외한 나머지 순번의 각 대출금에 대해서는 같은 표 원리금합계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각 잔여원금란 기재 원금에 대해 2023. 6. 1.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23. 6. 9.까지 위 표 이자란 기재 각 이율로 계산한 돈을 위 표 각 근보증한도액의 범위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고, 위 표 순번 4 기재 대출금에 대해서는 근보증한도액인 113,217,67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

피고는 주채무자 B에 대한 파산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위 파산절차에서 B의 재산으로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한 변제가 예상되므로 이 사건 청구는 주채무의 소멸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.

보건대,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B에 대한 위 각 대출금 채무가 2023. 6. 1. 이후 B 또는 피고에 의하여 변제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의 변제로 인한 소멸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임성실